

현안과 과제

■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

 **현대경제연구원**

목 차

■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

1. 개요	1
2.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	2
3. 시사점	6

1. 개요

○ 최근 우리 경제의 對 중국 수출 의존도¹⁾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, 사드 (ThAAD)²⁾ 배치 등 한·미 간 공조 강화가 향후 한·중 간 통상마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

- 지속 상승하는 對 중국 수출 의존도

-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0.7%에서 2015년 26.0%로 약 2배 증가하며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 상승

- 그동안 중국과의 분쟁 사례에서 볼 때, 이번 사드 배치는 향후 중국의 對 한국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

- 중국은 지난 2001년 일본의 중국산 대파 등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일본산 자동차, 핸드폰 등에 대한 특별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
- 또, 일본, 필리핀, 베트남과의 영토분쟁 때에도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뿐 아니라, 상대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림
- 한국과는 지난 2000년 6월 마늘 파동 이후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이 우려됨

○ 이에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< 중국의 주변 국가 간 분쟁 사례 >

구분	분쟁사례	중국의 보복 조치
일본	2001.4 • 일본의 중국산 대파, 표고버섯, 다다미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	• 일본산 자동차와 핸드폰, 에어컨에 대해 100% 특별관세 부과
	2010.9 • 디아오다오(센카쿠) 영토분쟁	• 對 일본 희토류 수출 중단 •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
	2012.9 • 디아오다오(센카쿠) 영토분쟁	• 중국 정부의 일본 관광 제한 촉구
필리핀	2009.2 • 남중국해 영토분쟁	• 필리핀 내 중국인 관광객 철수
베트남	2014.6 • 남중국해 영토 분쟁	• 중국내 베트남 기업 사업 입찰 중지
한국	2000.6 • 한국의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	• 한국산 폴리에틸렌, 휴대폰 수입
	2016.7 • 한국의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	?

자료 : 국내외 언론 종합.

1) 수출의존도는 우리의 총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.

2) 고고도 지역방어체계(사드,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)란 탄도미사일 방어요격체계로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.

2.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³⁾ 현황

① 전체 : 위생 및 검역(SPS)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이 높아짐

○ 對 한국 비관세 장벽은 2008년 이후 위생 및 검역(SPS)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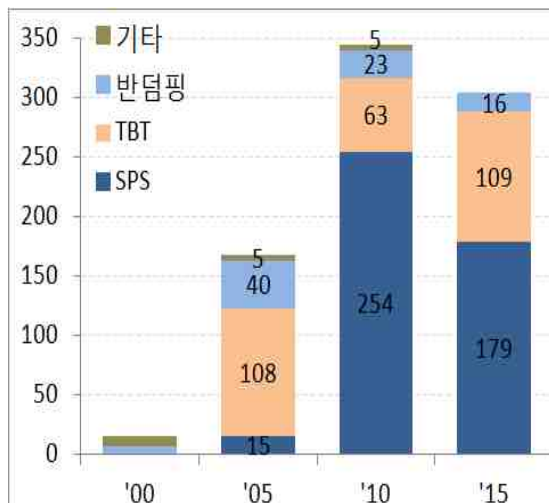
- 對 세계 비관세 조치⁴⁾는 주로 위생 및 검역(SPS), 기술장벽(TBT)를 중심으로 확대

- 중국의 對 세계 항목별 비관세 조치는 2015년 현재 위생 및 식물위생(SPS)이 179건, 기술장벽(TBT) 109건으로 전체의 각각 58.9%, 35.9%를 차지
- 한편, 반덤핑 조치는 2005년 40건에서 2015년 16건으로 점차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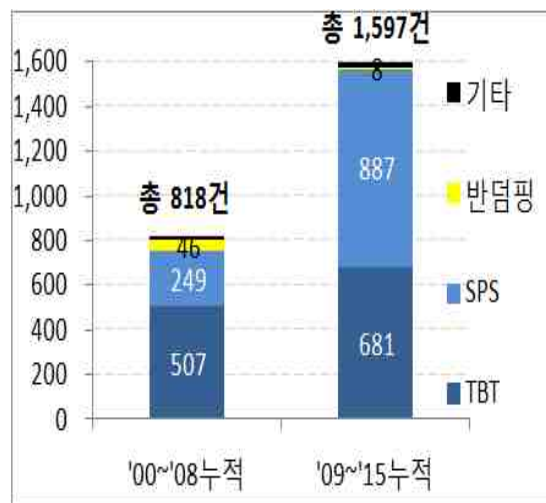
-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도 위생 및 검역(SPS) 중심으로 확대

- 중국의 對 한국 반덤핑 조치는 2000~2008년 46건에서 2009~2015년 8건으로 감소
- 하지만, 위생 및 검역과 기술장벽 건수는 동기준 각각 249건, 507건에서 각각 887건, 681건으로 급증

< 중국의 對 세계 항목별 비관세 장벽 현황 > (건수)



< 중국 對 한국 비관세 장벽 현황 > (누적 건수)



자료 : WTO I-TIP 자료로 HRI 재가공.

주 : TBT와 SPS 건수는 상대국으로부터 비관세조치를 받았다고 통보하는 국가가 해당품목의 HS코드를 기준으로 WTO에 보고한 통보문을 근거로 집계됨.

3) UNCTAD에 따르면, 보호무역은 관세, 무역구제(반덤핑, 상계관세, 세이프가드), 비관세장벽으로 구분. 비관세 장벽은 가격조치(관세 및 유사관세, 가격통제조치), 비가격조치(금융조치, 수량제한, 반독점), 기술조치(위생 및 검역(SPS), 기술장벽(TBT) 등), 제도적 조치(무역관련 투자조치, 비수출 관련 보조금, 정부조달 제한, 원산지 규정, 지적재산권 등)으로 분류됨.

4) 본고에서 비관세 조치는 WTO 자료에 따라 Bilateral(반덤핑, 수량제한), All Members(상계관세, SPS, TBT)로 구분됨.

② 산업별 : 가공식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거부가 전체의 약 70%에 이름

○ 산업별로 볼 때, 중국은 對 세계 농·축·수산물 뿐 아니라 전기·전자 부문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, 통관거부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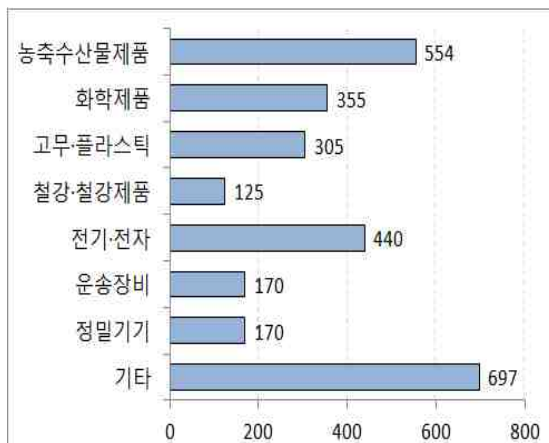
- 농·축·수산물과 전기·전자 부문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높음

- 2000~2015년까지 중국의 산업별 對 세계 비관세 조치는 누적 기준으로 농·축·수산물 554건, 전기·전자 440건, 화학제품 355건 등 순으로 많음
- 동기준 비중은 화학제품, 고무·플라스틱, 철강·철강제품, 전기·전자 등 4개 산업이 전체의 40%에 이름

- 한편, 세계 국가들의 對 중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거부는 주로 가공식품 위주로 나타남

-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를 당하는 분야는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2015년 현재 전체 통관거부 품목의 약 57%인 1,117건에 이름
- 또, 화장품 등 잡제품도 2014년에 200건에 이르렀으며, 2015년에도 156건으로 비교적 건수가 많음
- 한편, 섬유/직물,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도 2015년 현재 각각 207건, 9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< 중국의 산업별 對 세계 비관세 장벽 >
(누적 건수)



자료 : WTO I-TIP 자료로 HRI 재가공.

주 : 2000~2015년 누적 기준.

< 중국의 산업별 對 세계 통관거부 현황 >
(건수)

구분	'12	'13	'14	'15
가공식품	839	1,753	2,981	1,117
농산물	46	59	92	11
잡제품 (화장품 등)	70	110	200	156
생활용품	1	7	98	107
섬유/직물	0	0	165	207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	0	0	83	95
기타	108	171	282	274
총합계	1,064	2,100	3,901	1,967

자료 : 관세청 자료로 HRI 재정리.

주 : 세계 국가들의 對 중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거부 기준.

○ 한편, 한국의 對 중국 수출품 가운데,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를 당하는 제품은 주로 가공식품이 전체의 약 70%인 것으로 나타남

- 한국의 경우도 對 중국 수출품 가운데 가공식품의 통관거부 건수가 다수
 -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를 당하는 분야는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2013~2015년 누계로 보면 346건이며, 이는 전체 통관거부 총 건수 499건의 69.3%에 이룸
 - 가공식품 중 통관거부 사유는 주로 포장 불합격 100건, 라벨 불합격 39건, 유통기한 초과 34건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부분에서 거절당함
- 이밖에도 생활용품, 섬유/직물, 수산물, 잡제품 등 부문에서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 다수 발생

< 한국의 對 중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거부 현황 >

(누적 건수)

구분	주요 통관거부 원인	건수 (2013~2015 누계)
가공식품(총 346건) : 전체의 69.3%	•세균 기준치 초과	52건
	•대장균 기준치 초과	19건
	•라벨 불합격	39건
	•유통기한 초과	34건
	•인증서류 미비	19건
	•포장 불합격	100건
	소계	263건
생활용품(총 28건) : 전체의 5.6%	•증발잔류물(4% 초산) 최대허용치 초과	5건
	•증발잔류물(헥산) 최대허용치 초과	7건
	소계	12건
섬유/직물(총 15건) : 전체의 3.0%	•염색 견뢰도(정착도) 불합격	11건
수산물(총 20건) : 전체의 4.0%	•관능검사 불합격	12건
잡제품(총 65건) : 전체의 13.0%	•세균 기준치 초과	9건
	•라벨 불합격	16건
	•인증서류 미비	7건
	•포장 불합격	5건
	소계	37건

자료 : 관세청 자료로 HRI 재구성.

- 주 1) 통관거부 총건수는 2013~2015년 누적 기준 499건.
- 2) 상기 품목은 對 중국 통관거부 품목 중 상위 5대 부문 기준.
- 3) 관능검사란 이화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품질에 대해 평가하는 검사.

③ 유형별 사례 : 품목별 비관세 장벽 유형이 다양함

○ 유형별로는 對 한국 비관세 장벽은 기술장벽, 위생 및 검역 조치뿐 아니라 반덤핑 등 무역 장벽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어 있음

- 중국의 對 한국 비관세 장벽은 2000년 마늘 파동 등 통관조치에 따른 통상 마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TBT, SPS 등 중국의 보호무역 유형이 다양화됨

< 중국의 비관세 장벽 조치 주요 유형과 내용 >

구분	주요 내용
기술장벽 (TBT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제인증제도 (CCC,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003년 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·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 품목은 CCC 마크를 부착해야 수입·유통·판매가 가능 ▪ CCC 인증대상 품목은 2003년 132개에서 2014년에는 158개로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현재 자동차부품, 완구제품, 전기장치, 통신단말기, 음향영상장비, 가정용 기기 등 제품이 강제인증제도 대상품목임 - 수입화장품 인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(2~6개월 소요)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(8개월 소요)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 →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엄격한 동물실험이 요구됨
위생 및 검역 (SP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정 농산품에 대한 검역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국은 수입산 젓갈,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엄격하여 수산 조미품 규격에 부합하기 어려움 → 김치, 젓갈 등 비조리/발효 식품의 일반세균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-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국의 '특수영양식품'과 '보건(기능)식품'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 (CFDA)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함 ▪ 보건식품의 경우 중국 당국이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해, 성분구성이 14가지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만 위생허가증 발급 → 5년근 이상의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의약품에 준하는 위생기준을 적용 받고 있음
반덤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덤핑 조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국은 2002년 처음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후 그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→ 한국에 대해서는 철강(2002년), 석유화학제품(2004년), 폴리실리콘(2013년)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함
세이프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긴급수입제한 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WTO가입(2001년) 이후에는 WTO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고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세이프가드를 발동함 → 2000년 한국이 중국산 얼린마늘 수입관세율을 30%에서 315%로 올린데 대응해,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, 폴리에틸렌 수입중단 (마늘파동) → 2010년 9월 디아오위섬(센카쿠열도)에서 중일 양국간 갈등이 일자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 쿼터를 급격히 줄이고 통관을 지연시킴

자료 : 관세청, 중국해관총서 등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.

3. 시사점

- 최근 사드 배치 등 문제로 한중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,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

첫째, 對 중국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 경쟁력 강화 필요

- 최근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커지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수출도 지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
- 더욱이 중국의 對 한국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면 국내 외수경기 회복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
- 이에 따라 대 중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모색이 중요함

둘째,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의 對 한국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도 고려

- 향후 예상되는 서비스, 투자 등 분야에 대한 한중 FTA 추가 협상에 대비하여 기존 협상案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 산업별 검토 및 대응 필요
- 더욱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는 향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양국 정부 및 실무자간 협의 채널 마련이 시급

셋째,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중국의 무역정책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등으로 보호무역 피해 최소화 강구

-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 시장 분석을 면밀히 진행, 중국의 수입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보복 위협에 대해 정부채널을 통해 제기 및 조율 필요

넷째, 이번 사드배치로 중국의 혐한(嫌韓) 분위기 조성에 따른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경영 악화뿐 아니라, 요우커(遊客)의 국내 관광 감소로 이어져 對중국 관광수지 흑자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

- 최근 對 중국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,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조차도 부품의 현지조달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중국내 국내 제품 불매 운동이 가시화될 경우 경영상의 악화 초래 우려
- 더욱이 2015년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요우커가 전체 방한 외국인 중 45.2%인 598만 명에 이르면서 對 중국 관광수지 4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어 향후 요우커 급감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對중국 관광수지 흑자 위축도 우려

한재진 연구위원 (2072-6225, hzz72@hri.co.kr)

천용찬 선임연구원 (2072-6274, junius73@hri.co.kr)